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86
----------	-------

발의연월일 : 2025. 8. 5.

발 의 자 : 이인선 · 배준영 · 박충권
고동진 · 김성원 · 조지연
서지영 · 김석기 · 최은석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두어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일부 소매인들이 법적 기준이나 판매 질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하여 기존 법령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담배 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여 담배 판매 책임 및 준법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담배 소매인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담배 판매 시장의 교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뿌리, 줄기 등 담배의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의 다른 부분까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담배판매인이 소매인 지정 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7조의2 신설 등)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을 “연초(煙草)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소매인에 대한 교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담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소매인으로 신규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담배 판매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과”를 “연초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담배”란 <u>연초(煙草)의 잎을</u>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 <u>연초(煙草)를</u>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7조의2(소매인에 대한 교육)</u>
	① <u>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담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소매인으로 신규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u>
	② <u>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담배 판매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제30조(몰수와 추정) ① 제27조 ·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 죄에 관련된 <u>연초의 잎과</u> 담배는 몰수한다. ② (생 략)	③ <u>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 방법 ·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u> 제30조(몰수와 추정) ① ----- ----- -----<u>연초와</u>----- -----. ② (현행과 같음)
---	---